

「2027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사업」 대기업 사전 수요조사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정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을 지자체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조사개요

- ☐ 조사기간: 2026. 9. 30.(수) ~ 10.30.(금)
- ☐ 목 적: 참여기업 수요 조사 ※ 사전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공고 예정
- ☐ 제출방법: 불임문서(수요조사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
- ☐ 제 출 처: e-메일 제출(98jhs@korea.kr), 문의(전화수 사무관, 044-201-6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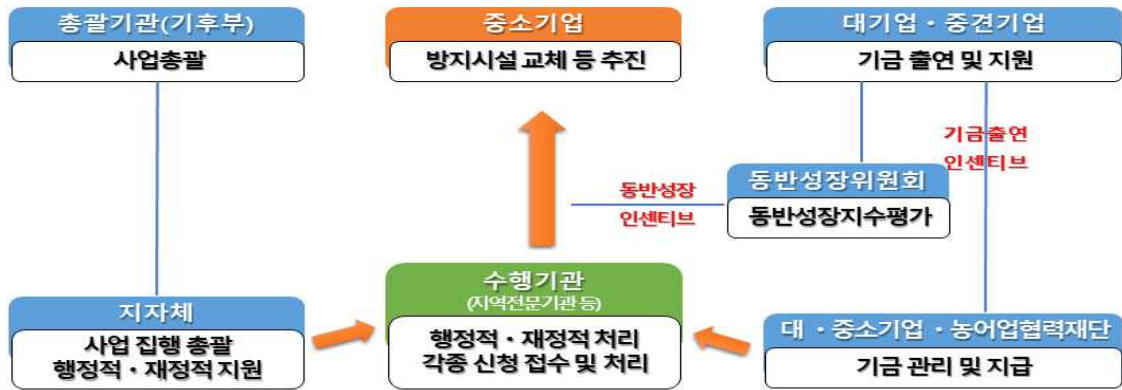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정부·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
- ☐ 주요내용: 정부·대·중소기업 매칭*으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 (지원비율) 대기업 50%,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대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민간자율 기획사업

- 참여기업 인센티브: 녹색기업 지정평가 가점, 동반성장지수 배점 반영, 대기 총량 외부 감축활동 인정, ESG평가 배점 반영, 기업이미지 제고 지원 등
- 사업추진 방식



※ 본 사업 공고시 세부 사업 추진방식 변경 가능

- 사업기간: '27. 1. ~ 12.
- 사업비: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이내(시설 종류·용량별 상이)
 - ※ 설치비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불가하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은 제한하지 않음
- 사업규모: 중소기업 00개소(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포함)
 - ※ 국회 심의 과정 및 지방비 편성 등에 따라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액(개소) 상이

3 신청자격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국내 소재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동시 신청" 및 대기업·중견기업 "단독 신청"도 가능

[참여제한]

- 중소기업이 지원기업(대기업 등)과 법인세 법령 등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보조금법」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